

금강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(안) 심의서

1. 규정 개정 취지

- 규정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문구 수정
- 우리 대학교 설립 종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초청 승려에 대한 장학금 근거 마련
- 장학금 수혜기간 기준 마련

2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- 문구 수정
 - 「대학원 학칙」 근거 조항 불일치 조정: 제1조(목적) 대학원 학칙 제45조→제47조
 - 규정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문구 수정: 제2조(적용범위) 문구 조정
- 우리 대학교 설립 종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초청 승려에 대한 장학금 근거 마련
 - 제6조(이중수혜 제한)제1항제2호 삭제: 장학금의 총액 제한 삭제
 - 입학금·수업료 장학금 100%, 기숙사비 및 식비 지원 100%
- 장학금 수혜기간 기준 마련
 - 해당 학기 장학금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 학기까지 장학 수혜 근거 마련
 - 「대학원 학칙」 제5조(수업연한)와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5조(수혜기간) 불일치 조정(규정 개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)
 - ※ 「대학원 학칙」 제5조(수업연한) 변경('20.10.22., 박사과정 3년→2.5년)
 -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」 박사과정 장학금 수혜기간 6학기(개정 미진행)

3. 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5조에 의거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함)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거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함)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 ○. ○.>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석·박사과정 학생 및 합격하여 등록을 앞둔 예비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 단, 세부적용은 제10조(종류)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석·박사과정 학생 및 입학전형에 합격한 입학생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6. ○. ○.></p>

현행	개정(안)
<p>제5조(수혜기간)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석사과정은 4학기,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5조(수혜기간)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,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 장학금은 유효하다.</u> <개정 2026. ○. ○.></p> <p>② 석사과정은 4학기, 박사과정은 <u>5학기</u>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6. ○. ○.></p>

현행

제10조(종류)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강장학금
2. 원각불교장학금
3. 천태장학금

② 교내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2. 15>

장학금 종류	장학생 선발 대상	장학금 지급 내용
금강 장학금	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타 불교종단 승려와 본교 출신자(석사)로 본 대학원(박사)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<개정 2021. 2. 15>	입학금 100% 지급
원각 불교 장학금	1.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7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2.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5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3.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7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4.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5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천태 장학금	본 대학교 설립재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및 본교 학부 출신자(학사)로 본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연구 및 학업의지를 고취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<개정 2021. 2. 15>	입학금 100% 지급 수업료 10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
개정(안)

제10조(종류)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강장학금
2. 원각불교장학금
3. 천태장학금

② 교내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2. 15, 2026. 0. 0.>

장학금 종류	장학생 선발 대상	장학금 지급 내용
금강 장학금	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타 불교종단 승려와 본교 출신자(석사)로 본 대학원(박사)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<개정 2021. 2. 15>	입학금 100% 지급
원각 불교 장학금	1.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7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2.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5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3.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7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4.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	수업료 5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천태 장학금	1. 본 대학교 설립재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및 본교 학부 출신자(학사)로 본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연구 및 학업의지를 고취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<개정 2021. 2. 15>	입학금 100% 지급 수업료 100% 지급 <개정 2021. 2. 15>
	2. 대한불교천태종 초청 승려로 본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연구 및 학업의지를 고취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<개정 2026. 0. 0.>	입학금 100% 지급 수업료 100% 지급 기숙사비 및 식비 100% 지급 <개정 2026. 0. 0.>

현행	개정(안)
	<p data-bbox="1066 271 1150 300">부 칙</p> <p data-bbox="810 315 1406 394">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data-bbox="810 409 1406 533">가. 제5조제1항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p> <p data-bbox="810 548 1406 627">나. 제5조제2항에 대하여는 202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</p>